

포상금 지급기준(제43조 관련)

부정행위자	포상금 금액
1. 법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)·감독·코치·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	5,000만원 이하
2.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	2억원 이하
3.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	1,500만원 이하
4.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	1,500만원 이하
5.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	500만원 이하
6.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	1,500만원 이하
7. 속임수나 위력(威力)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	1,500만원 이하